

2021 - 2495

() ()

1.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-2365호(2020.08.20.)로 열람공고한 ‘옛 성동구치소 부지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) 결정(안)’에 대하여 2021년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(2021.03.24.) 심의결과(수정 가결)를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9월 30일
서울특별시 장

1. 계획의 개요

- 가. 계 획 명 :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
 나. 위 치 :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
 다. 면 적 : 78,758.2㎡
 라. 사업시행자 : 서울주택도시공사
 마.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
 가)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(신설)

구 분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신 설	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	송파구 가락동 162번지	-	증) 78,758.2	78,758.2	

나)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 :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및 도면 참조

2. 열람기간 및 장소

- 가. 열람기간 : 2021. 10. 1(금). ~ 2021. 10. 14(목)
 나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과(☎02-2147-3001),
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(☎02-3410-7590)
 다. 관계도서 : 게재생략(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)

3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(☎ 02-2133-8432)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로(☎ 02-3410-7590)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1 - 2497

()

국세청 홈텍스(www.hometax.go.kr)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이 확인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(등록말소)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, 기타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1년 9월 30일
서울특별시

1. 공고기간 : 2021.10.1.~2021.10.14.(14일간)

2. 처분대상 및 내용

업 체 명 (대 표 자)	업종 및 등록번호	소 재 지	처분사유	관련 법규	처분내용	처분 근거
예건종합건설주 (조성일)	건축공사업 01-4156	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10, 617호(도곡동, 현대비전21)	사업자등록(409-88-00942)폐업 폐업일자 : 2021.06.30.	법 제83조	등록말소 (2021.10.15.)	법 제83조 제12호

3.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(이문서 송달일)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(처분을 행한 행정기관)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☎02)2133-8125으로 문의 바랍니다.